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23
----------	------

2025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 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이해경)

- 안건번호 제2823호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0개 기금 28개 계정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8조 2,172억원으로 2023년도말 대비 7.2%인 5,549억원이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중 기금 조성액은 2조 6,381억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7,338억원,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예수금 1조 3,032억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윤자금 회수수입 2,915억원 등이며
 - 기금 사용액은 2조 832억원으로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9,215억원, 예수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조 1,307억원 등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5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기금결산 관련 검토

(1) 기금결산 총괄 설명 관련

- 지방기금법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정례회중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제출된 기금결산 승인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①기금결산 총괄설명, ②기금 수입·지출결산, ③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음
- '24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개 기금, 28개 계정을 운용하여 당해연도말 8조 2,171억 5,8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23회계연도말 조성액(7조 6,622억 7,900만원)보다 5,548억 7,9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1〉 2024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 년 도 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 해 연 도 말 조 성 액 (E = A + 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7,662,279	554,879	2,638,050	2,083,172	8,217,158

- 기금에 대한 결산결과, 2조 6,380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 2조 831억 7,2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5,548억 7,900만원 증가한 바,

■ 수입과목중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회수를 제외한 ①전입금 7,337억 5,800만원, ②예수금 1조 3,032억 1,000만원, ③융자금회수 2,914억 5,000만원 등을 합한 당해연도 수입(당해연도 조성액) 2조 6,380억 5,000만원에 대해

■ 지출과목중 예치금과 예탁금을 제외한 ①비용자성사업비 6,860억 4,200만원, ②융자성사업비 2,354억 6,200만원, ③차입금원리금상환 1조 198억 3,300만원 등을 합한 당해연도 지출(당해연도 사용액) 2조 831억 7,200만원을 차감하여 연도말 기금 조성액 증감분을 산출한 것임

〈표 3-2〉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 (수입 및 지출)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당 해 연 도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사 용 액)				
소 계		2,638,050		소 계		2,083,170		
전	입	금	733,758	비	용	자	성 사 업 비	686,042
예	수	금	1,303,210	용	자	성 사 업 비		235,462
보	조	금	-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1,019,833
용	자	금 회 수	291,450	기	타	지	출	28,947
차	입	금	-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110,914
이	자	수 입	168,048	인	력	운 영	비	1,744
기	타	수 입	141,583	기	본	경	비	22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384~1385

〈표 3-3〉 2024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A=B+C+D)	시금고 예치금 (B)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탁금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타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D)
계	8,217,158	2,047,878	865,231	5,304,0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52,362	583,913	664,400	5,304,048
통합계정	5,448,789	144,740	0	5,304,048
재정안정화계정	1,103,573	439,173	664,4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275,645	245,645	30,000	0
용자계정	158,247	158,247	0	0
투자계정	57,521	57,521	0	0
사회적경제계정	59,876	29,876	30,000	0
식품진흥기금	56,709	14,709	42,000	0
기후대응기금	45,244	29,244	16,000	0
도로굴착복구기금	41,761	41,761	0	0
양성평등가족기금 ^{주1)}	24,334	1,134	23,20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1,152	9,152	2,000	0
사회복지기금	64,166	33,856	30,310	0
노인복지계정	12,132	642	11,490	0
장애인복지계정	21,809	7,409	14,400	0
자활계정	9,308	4,888	4,420	0
주거지원계정	20,916	20,916	0	0
체육진흥기금	57,565	5,243	52,321	0
재난관리기금	810,095	810,095	0	0
재난계정	673,015	673,015	0	0
구호계정	137,080	137,080	0	0
남북교류협력및평화 통일기반조성기금	33,213	33,213	0	0
지역교류협력기금 ^{주2)}	1,987	1,987	0	0
국제개발협력기금 ^{주3)}	3,371	3,371	0	0
도시재생기금	133,997	133,997	0	0
관광진흥기금	7,592	2,592	5,000	0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923	1,923	0	0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668	668	5,000	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217	5,217	0	0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2,123	92,123	0	0
고향사랑기금	565	565	0	0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주4)}	0	0	0	0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51	51	0	0

주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시행 '24. 7.15)으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가족기금으로 변경

주2)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 '24. 7.15)에 따라 기금명 등 변경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 지역교류협력기금)

주3)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 '24. 7.15)에 따라 기금명 등 변경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국제개발협력기금)

주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시행 '24. 9.30)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당초 '24.12.31까지 → 연장 '29.12.31까지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772억 2,900만원과 당해 회계연도 수입 5조 3,065억 5,600만원을 운용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5조 3,359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478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기금운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표 3-4〉 기금 운용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 이 (A)	년 월 (B)	도 액 (C)	수 입 액 (D)	지 출 액 (E)	다 음 연 도 액 (F)	비 고
77,229	5,306,556	5,335,956	47,828	(A+B)=(C+D)		

(2) 기금의 수입 · 지출 결산 관련

1) 수입결산

- 기금에 대한 2024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4조 7,839억 4,200만원이나, 결산결과 실제수납액은 5조 3,065억 5,600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보다 10.9%, 5,226억 1,4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된 수입계획(5조 2,546억 600만원)보다 519억 5,000만원 증가하여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5〉 2024회계연도 과목별 수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수납액 ^{주1)}	증 감 액	주 요 증 감 내 역
	당 초	수 정			
	(A)		(B)	(C=B-A)	
계	4,783,942	5,254,606	5,306,556	522,614	
전 입 금	414,209	738,138	733,758	319,549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83억 2,700만원 ②하수도사업회전기금 156억 100만원 ③자원화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3억 7,900만원
보 조 금	-	-	-	-	
차 입 금	-	-	-	-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81,415	281,395	291,450	10,035	①공무원주거안정기금 △19억 4,100만원 ②기후대응기금 △19억 1,900만원 ③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95억 9,100만원 ④식품진흥기금 31억 5,400만원
예 탁 금 원 금 회 수	25,920	25,920	25,920	-	
예치금회수	2,490,630	2,642,585	2,642,585	151,955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22억 7,1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868억원 ③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566억 2,900만원
예 수 금	1,329,072	1,303,210	1,303,210	△25,862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58억 6,200만원
이 자 수 입	116,611	152,494	168,048	51,437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억 5,7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17억 1,300만원 ③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8억 400만원 ④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0억 5,800만원
기 타 수 입	126,081	110,862	141,583	15,502	①공공시설등설치기금 △406억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77억 8,000만원 ③도로굴착복구기금 143억 1,900만원

주1) 전년도이월액을 제외한 '24회계연도 당해연도분 실제수납액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389~1421

○ **전입금**은 당초 4,142억 9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결산결과 3,195억 4,900만원 증가한 7,337억 5,800만원이 실제 수납된 바,

-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제잉여금중 3,083억 2,700만원이 순증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의 경우에도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156억 100만원이 순증되었으나,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수입계획보다 △43억 7,900만원 감전입된 것으로 확인됨

○ **융자금회수**는 당초 2,814억 1,5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당초보다 100억 3,500만원 증가된 2,914억 5,000만원이 실제 수납된 바,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경우, 전세자금 지원기간을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9억 4,100만원 감수납되고, **기후대응기금**은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회수연체, 민간융자금 조기상환액 감소 등으로 당초보다 △19억 1,900만원 감수납 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당초계획보다 △8억 9,200만원이 감수납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도 당초 계획보다 △4억 2,700만원이 감수납 되었으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조기상환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융자금 상환이 발생되어 당초 수입계획보다 95억 9,1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조기상환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31억 5,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및 이자 회수로 당초보다 24억 2,100만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의 사유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회수**는 지난 회계연도말까지 지출항목중 예치금에 적립한 여유재원을 다음연도에는 수입과목인 예치금회수로 수입계획하는 것으로써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2조 4,906억 3,0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1,519억 5,500만원 증가한 2조 6,425억 8,500만원이 실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당초보다 △922억 7,100만원 감소되었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경우에도 당초보다 △13억 5,900만원 감소된 바, 회계연도 개시이후 지난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수입계획한 예치금회수 수입을 감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경우에는 결산결과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868억원 증가되었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에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566억 2,900만원 증가되고, **중소기업육성기업 투자계정**도 당초보다 490억 2,900만원 증가되는 등 16개 기금, 21개 계정에서 예치금회수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예수금**은 타 회계나 기금에 대한 상황이 전제된 차입재원을 수입항목에 계상한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당초 1조 3,290억 7,2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3차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258억 6,200만원 감수납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당초 1,166억 1,1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514억 3,700만원 증가한 1,680억 4,8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포함한 5개 기금, 6개 계정에서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6억 5,300만원 감수납 되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을 포함한 17개 기금, 21개 계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이자수입이 520억 8,200만원 초과수납 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수입**은 당초 1,260억 8,1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155억 200만원

증가한 1,415억 8,3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은 '24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수입 계획중 **그 외수입** △406억원 전액을 감액한 바 있고, **기후대응기금**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미배당에 따른 수입감소로 당초보다 △22억 4,8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나,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타수입**을 당초보다 277억 8,000만원 증액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사업 증가에 따라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이 당초보다 143억 1,900만원 초과수납되는 등의 사유로 **기타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6〉 기금별 수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정액	실제 수납액	수납률
		당초	수정 (A)					
			(B)	(C=A+B)	(D)	(E)	(E / C)	
계		4,783,942	5,254,606	77,229	5,331,835	5,388,197	5,383,785	10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26,946	2,931,383	-	2,931,383	2,932,450	2,932,450	100.0
	통합계정	1,499,677	1,474,787	-	1,474,787	1,473,320	1,473,320	99.9
	재정안정화계정	1,227,268	1,456,595	-	1,456,595	1,459,129	1,459,129	100.2
중소기업육성기금		485,113	561,400	-	561,400	578,425	574,015	102.2
	융자계정	375,618	392,188	-	392,188	402,666	402,666	102.7
	투자계정	71,613	126,542	-	126,542	127,870	127,870	101.0
	사회적경제계정	37,881	42,669	-	42,669	47,888	43,478	101.9
식품진흥기금		18,605	20,558	-	20,558	24,321	24,321	118.3
기후대응기금		71,464	78,691	3,472	82,163	78,637	78,637	95.7
도로굴착복구기금		63,690	67,247	1,027	68,274	83,383	83,383	122.1
양성평등가족기금		1,877	2,056	-	2,056	2,017	2,017	98.1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42,613	43,385	-	43,385	39,061	39,061	90.0
사회복지기금		44,568	47,385	-	47,385	50,646	50,644	106.9
	노인복지계정	1,124	1,155	-	1,155	1,228	1,228	106.3
	장애인복지계정	7,930	10,787	-	10,787	10,862	10,862	100.7
	자활계정	5,916	5,929	-	5,929	5,951	5,951	100.4
	주거지원계정	29,597	29,512	-	29,512	32,602	32,601	110.5
체육진흥기금		13,442	15,786	-	15,786	16,388	16,388	103.8
재난관리기금		1,010,401	1,195,374	72,608	1,267,983	1,283,295	1,283,295	101.2
	재난계정	867,815	996,158	72,608	1,068,767	1,076,717	1,076,717	100.7
	구호계정	142,586	199,215	-	199,215	206,578	206,578	103.7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1,300	34,409	-	34,409	34,489	34,489	100.2
지역교류협력기금		2,810	3,223	-	3,223	3,243	3,243	100.6
국제개발협력기금		6,601	6,989	-	6,989	6,990	6,990	100.0
도시재생기금		117,747	125,875	120	125,996	135,177	135,177	107.3
관광진흥기금		2,889	2,979	-	2,979	3,049	3,049	102.4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187	2,304	-	2,304	2,380	2,380	103.3
	서울관광플라자계정	702	674	-	674	668	668	99.2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4,996	23,637	-	23,637	21,888	21,888	92.6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5,992	91,532	-	91,532	92,123	92,123	100.6
고향사랑기금		227	638	-	638	596	596	93.5
공공시설등설치기금		40,600	-	-	-	-	-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2,051	2,051	-	2,051	2,011	2,011	98.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2) 지출결산

-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당초 4조 7,839억 4,2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5조 2,546억 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전년도이월액(772억 2,900만원)을 포함한 '24회계연도 지출계획현액(5조 3,318억 3,500만원)에 대해 여유재원 예치를 포함하여 5조 3,359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772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20개 기금, 28개 계정에 대한 지출결산 결과를 제출하였음

〈표 8-7〉 지출결산 결과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B)	지출계획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이월액 (E)	집행잔액 ^{주1)} (F=C-D-E)
	당초	수정 (A)					
계	4,783,942	5,254,606	77,229	5,331,835	5,335,956	47,828	△51,949
비용자성비	484,580	849,897	73,842	923,739	686,019	45,005	192,715
용사업성비	283,319	298,379	3,386	301,766	235,462	2,823	63,481
예치금	1,553,039	1,681,044	0	1,681,044	2,000,049	0	△319,004 ^{주2)}
예월리금상환	113,087	113,087	0	113,087	110,914	0	2,173
예탁금	1,321,800	1,252,735	0	1,252,735	1,252,735	0	0
차입리금상환	1,027,504	1,027,504	0	1,027,504	1,019,833	0	7,670
기본경비	446	435	0	435	228	0	207
인력운영비	164	2,039	0	2,039	1,744	0	294
기타지출	0	29,483	0	29,483	28,947	0	536

주1) 기금은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여유재원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표출되지 않음. 다만, 위 <표>는 세부사업의 지출상황을 일반회계 등에 준하여 설명하고자 집행잔액(혹은 불용, 미집행)을 산출한 것임

주2) 지출계획보다 초과지출되어 △으로 표시되나, 사실상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여유재원이 초과 적립된 것을 의미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384~1385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비용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9,237억 3,900만원 중 6,860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450억 5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4.9%)을 이월하고, 1,927억 1,5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20.9%)을 미집행한 것으로 제출한 바,

〈표 3-8〉 기금별 비용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주1)}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D/A)
계	133	923,739	686,019	45,005	192,715	20.9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3	78,766	67,331	-	11,434	14.6
투자계정	12	76,122	64,798	-	11,324	14.9
사회적경제계정	3	407	142	-	264	64.9
식품진흥기금	12	2,294	2,092	-	202	8.8
기후대응기금	24	11,173	8,862	1,416	894	8.0
도로굴착복구기금	2	46,283	41,619	1,114	3,548	7.7
양성평등가족기금	8	1,067	872	106	88	8.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1	32,707	29,908	-	2,798	8.6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	646	584	-	61	9.6
자활계정	5	642	642	-	-	0.0
주거지원계정	1	7,800	5,798	-	2,001	25.7
체육진흥기금	15	11,210	11,141	-	69	0.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	478,463	373,164	41,414	63,885	13.4
구호계정	3	75,583	69,497	-	6,085	8.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1	2,055	1,238		816	39.7
지역교류협력기금	6	2,074	1,253	-	820	39.6
국제개발협력기금	14	5,347	3,449	274	1,623	30.4
도시재생기금	1	88,572	1,177	678	86,716	97.9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	500	455	-	45	9.0
고향사랑기금	1	30	26	-	3	11.5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1	1,990	1,959	-	30	1.5

주1)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액중 용자성 재원은 제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 **도시재생기금**의 경우, 당초 다동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871억 2,6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토지보상 절차지연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지출계획현액(885억 7,200만원)의 97.9%, 867억 1,6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당초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250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 예방**중 세부사업인 **재난예방**은 지출계획현액(4,439억 6,900만원)의 80.1%, 3,557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을 사유로 집행잔액 491억 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12개의 세부사업에 761억 2,2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647억 9,8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81.5%)을 지출한 바,
 - **스케일업펀드** 출자를 포함한 8개 세부사업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80% 이상 지출하였으나, **재도전지원펀드**의 경우, 지출계획현액(18억원)대비 36.1%, 6억 5,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3-9〉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불용률 (D = C / A)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계	76,122	64,798	11,324	14.9
	스케일업펀드 출자	9,500	9,200	300	3.2
	첫걸음동행펀드 출자	5,100	4,334	766	15.0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9,600	9,170	430	4.5
	창업지원펀드 출자	15,500	13,365	2,135	13.8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10,500	8,291	2,208	21.0
	창조산업펀드 출자	10,300	7,803	2,496	24.2
	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	422	422	-	0.0
	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4,800	4,090	710	14.8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4,500	3,297	1,203	26.7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1,800	1,150	650	36.1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	200	200	-	0.0
	첨단제조펀드 출자	3,900	3,475	425	10.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에 비용자성사업비(사회보장적수혜금) 78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대상가구수 감소로 57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계획현액 대비 25.7%, 20억 1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0〉 사회투자기금 주거지원계정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 조 지 금	7,800	5,798	2,001	25.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경우, 당초 단일 세부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20억 8,000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 회계연도중 조례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사업의 사업내용이나 지출액을 변경하거나 지출항목(예산과목)을 변경하였음에도 기금결산결과 지출계획현액(20억 8,000만원)의 39.3%, 8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회계연도중 당초 지출계획대비 미집행 가능성이 예상되어 사업내용과 집행시기, 지원대상을 수정하여 집행률을 높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특성상 일반회계 등과 비교하여 불용액 발생에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어 불용액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표 3-1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사업	2,080	1,262	817	39.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융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3,017억 6,600만원 중 78.0%, 2,354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2,3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0.9%)을 이월하였으며 634억 8,1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21.0%)을 미집행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3-12〉 기금별 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D/A)
계			10	301,766	235,462	2,823	63,481	21.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융 자 계 정		1	215,000	164,548	-	50,451	23.5
	사 회 적 경 제 계 정		1	5,000	3,454	-	1,546	30.9
식 품 진 흥 기 금			1	2,000	515	-	1,484	74.2
기 후 대 응 기 금			3	45,400	40,526	2,823	2,051	4.5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1	7,400	3,445	-	3,954	53.4
	자 활 계 정		1	615	418	-	197	32.1
	주 거 지 원 계 정		1	8,350	5,886	-	2,464	29.5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1	18,000	16,668	-	1,331	7.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422~1499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당초 20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신청자의 신용등급 하락,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최종심사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74.2%, 14억 8,400만원이 미집행되고,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74억원을 지출계획하여 39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금전적, 물리적 조건을 갖춘 매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계약체결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출계획현액의 53.4%, 39억 5,4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는 50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융자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30.9%, 15억 4,6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3〉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투융자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5,000	3,454	1,546	30.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예치금**은 당초 1조 5,530억 3,900만원으로 계획하고,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조 6,810억 4,4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실제 2조 4,900만원이 지출(예치)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4〉 예치금 계획 대비 지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C)	지출액 - 수정계획 (B-C)
당 초 (A)	수 정 (B)		
1,553,039	1,681,044	2,000,049	319,004

- 결산결과 예치금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초과 지출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보다 실제 세출결산이 초과지출(초과적립)된 것에 해당되나,

기금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각 기금 별로 '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에 연동한 결과인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여유재원인 세계잉여금을 수입계획에는 예치금회수로 수입처리하고, 지출계획에는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예치금으로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도시재생기금**은 결산결과 당초 지출계획보다 959억 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다동공원 조성을 위해 보상비(849억 9,100만원)를 포함한 시설비 등 871억 2,600만원이 지출계획 되었으나, 토지보상 절차지연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이 미집행되어 연도말 당해연도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치금이 초과적립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예치금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연도말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하여 당초 지출계획보다 723억 6,700만원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당초 지출계획보다 721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회계연도중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예치금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연도말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하여 지출계획보다 186억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10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출납사무가 완결된 이후 각 기금별 예치금 지출계획과 실제 적립액을 비교하면, 3,190억 400만원이 초과 적립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도시재생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국제개발협력기금**의 경우, 당초 예치금 지출계획보다 100% 이상 초과 적립되었고, **도시재생**

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 7개 계정은 실제 적립된 예치금이 100억원 이상 초과 적립되었으나,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계획액보다 실제 예치금 적립액이 부족하게 예치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초과(예치) 혹은 부족 적립되는 것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기금별 실제 예치된 재원 즉, ‘실제 통장잔고’와 지출계획상 예치금 적립계획 즉, ‘장부상 계획’을 현행화시키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로 판단됨
-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가 불일치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결산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중 예치금 규모나 발생사유를 신뢰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도 실제 통장잔고가 아닌 장부상 계획치를 수입계획에 반영시키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계획과 실체가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계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①**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관련 회신에 의하면, 다음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잔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 회계연도종료에 앞서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를 일치시킴으로써 불일치 상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장부상 허수가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반영되는 사례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2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와 차이가 있는 **지역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계정포함)은 금번 제331회 정례회중 안건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통해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에도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도 회계연도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개별 기금의 경우에도 예치금 불일치 규모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5〉 기금별 예치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결산액-최종계획 ^{주1)}	
		당 초	최 종	(결 산 액)	(적립액) ^{주1)}	(적 립 륜)
		(A)	(B)	(C)	(B-C)	
계		1,553,039	1,681,044	2,000,049	319,004	1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99,861	144,035	144,740	704	0.5
	재 정 안 정 화 계 정	199,571	428,898	439,173	10,274	2.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용 자 계 정	84,610	85,880	158,247	72,367	84.3
	투 자 계 정	3,829	44,859	57,521	12,661	28.2
	사 회 적 경 제 계 정	22,464	27,251	29,876	2,624	9.6
식 품 진 흥 기 금		7,449	9,258	14,709	5,450	58.9
기 후 대 응 기 금		20,447	25,579	25,004	△574	△2.2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23,019	21,976	40,646	18,670	85.0
양 성 평 등 가 족 기 금		797	976	1,028	51	5.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 민 지 원 기 금		10,281	10,678	9,152	△1,525	△14.3
사 회 복 지 기 금						
	노 인 복 지 계 정	569	506	642	136	26.9
	장 애 인 복 지 계 정	510	3,367	7,409	4,042	120.1
	자 활 계 정	4,712	4,666	4,888	221	1.8
	주 거 지 원 계 정	13,447	13,362	20,916	7,553	56.5
체 육 진 흥 기 금		2,221	4,565	5,243	677	14.8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742,805	559,491	631,601	72,109	12.9
	구 호 계 정	128,332	123,096	137,080	13,984	11.4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 반 조 성 기 금		29,170	32,279	33,213	933	2.9
지 역 교 류 협 력 기 금		750	1,145	1,987	841	73.5
국 제 개 발 협 력 기 금		1,784	1,472	3,097	1,624	110.4
도 시 재 생 기 금		30,179	7,413	133,319	95,905	256.3
관 광 진 흥 기 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677	1,794	1,923	128	7.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702	674	668	△5	△0.8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6,989	5,630	5,217	△412	△7.3
하 수 도 사 업 회 전 기 금		75,992	91,532	92,123	590	0.6
고 향 사 랑 기 금		208	598	565	△32	△5.5
공 공 시 설 등 설 치 기 금		40,600	-	-	-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51	51	51	-	0.1

※ 주1) 결산액-최종계획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최종계획대비 결산결과를 검토한 것임

주2) 적립액은 최종계획대비 실제 초과적립 되거나, 부족 적립된 규모임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당초 1,130억 8,7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 21억 7,300만원 감소된 1,109억 1,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21억 7,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6〉 예수금원리금상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113,087	113,087	110,914	△2,173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1억 7,000만원 감소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950천원 감소 ③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7,130원 감소

-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포함하여 3개 기금에서 당초 1조 3,218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지출계획보다 △690억 6,500만원 감소된 1조 2,527억 3,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전액 예탁한 것으로 확인됨
- **차입금원리금상환**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조 2,705억 4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지방채 발행축소에 따른 상환규모 감소로 1조 198억 3,300만원을 상환(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 **인력운영비**는 당초 1억 6,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억 3,9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17억 6,800만원을 지출한 바,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지난 '23회계연도와 동일하게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인력운영비를 지출계획 하지 않았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공공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에 대한 의료인력채용 인건비를

지출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력운영비 18억 4,9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15억 7,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표 3-17〉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출항목	기금운용계획		지출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당초 (A)	수정			
예탁금	1,321,800	1,252,735	1,252,735	△690,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90억 6,500만원 감소
차입금 원리상환	1,027,504	1,027,504	1,019,833	△7,6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76억 7,000만원 감소
인력 운영비	164	2,039	1,768	1,604	①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0 → 15억 4,900만원 지출) ②국제개발협력기금 (1억 6,400만원 전액 지출) ③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4,500천원 → 23,534천원 지출)

- **국제개발협력기금**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부터 정책사업인 **국제교류협력 추진**의 세부사업인 ①**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 3,700만원)와 ②**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 도시정책 최고위과정**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2,600만원)를 지출계획하여 지출계획액(1억 6,400만원)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계획한 사무관리비(3억 4,000만원)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24,500천원)를 포함한 7개 통계목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이 불가하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기금결산의 경우와 같이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인력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경우에는 '2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한 사무관리비중 일부를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포함한 6개 통계목을 신설한 것은 기금운용의 신축성을 과도하게 활용한 사례일 수 있어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사업내용과 지출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출계획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본경비**는 당초 4억 4,6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억 1,800만원 감소한 2억 2,800만원을 지출한 바,

- 개별 기금의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심사로 대체되거나 개최빈도 감소 등의 사유로 **도로굴착복구기금** 등에서 기본경비 실제지출액이 감소되고, 지방채 발행이 축소됨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7,0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8〉 기본경비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당초 (A)	수정			
기본경비	446	435	228	△2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00만원 감소 등
기타지출	-	29,483	28,947	△28,947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89억 4,700만원 증가

○ **기타지출**은 당초 지출계획하지 않았으나, 회계연도중 294억 8,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289억 4,700만원을 지출한 바,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당초 **기타지출**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2022년도 분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289억 4,700만원을 반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계정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액은 예측가능한 지출임에도 보건복지부의 반납요청이후 반납액을 편성하고 있어 지난 '21 회계연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처럼 예측가능하고, 필수적인 반납액은 선제적으로 지출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변경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 바,
 - '24회계연도에 운용한 20개 기금, 28개 계정중 19개 기금, 27개 계정에서 총 69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이중 10건(10개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금별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 '24회계연도의 경우, 서면심의 등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빈도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지출 결산결과 또한 지출계획된 기본경비(4억 3,500만원)중 52.4%, 2억 2,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서면심의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서면심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면회의를 통해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가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9〉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 결과
제 324회 정 려 회 (' 24.6)	① 사 회 복 지 기 금 장애인복지계정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등 2,856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2,856백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변경	원안 가결
	② 도 시 재 생 기 금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등 8,128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 지출계획 : 예치금(7,949백만원 증)포함하여 지출계획변경	
	③ 체 육 진 흥 기 금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2,344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2,344백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변경	원안 가결
	④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등 52,230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49,030백만원 증) 포함하여 지출계획변경	원안 가결
	⑤ 지역교류협력기금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405백만원) 등 412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412백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변경	원안 가결
	⑥ 양성평등가족기금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179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179백만원 증) 포함하여 정책사업간 지출계획 변경	원안 가결
	⑦ 기 후 대 응 기 금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7,227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5,525백만원 증) 포함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지출계획 변경	원안 가결
	⑧ 고 향 사 랑 기 금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등 411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390백만원 증)포함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지출계획 변경	원안 가결
	⑨ 하 수 도 사 업 회 전 기 금	■ '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지출계획에 반영 ○ 수입계획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0→15,601백만원 ○ 지출계획 : 예치금 15,601백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변경	수정 가결
제 327회 정 령 회 ('23.12)	⑩ 공공시설등설치기금	○ 수입계획 : 기타수입 40,600백만원 → △40,600백만원 ○ 지출계획 : 예치금(40,600백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지출계획변경	원안 가결

(4) 각 기금의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1) 융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중 중소기업 직접융자는 당초 융자금 2,000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24년 8월, 이커머스 플랫폼(티몬, 위메트 등) 정산지연 등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150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 1,645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4억 5,100만원이 미집행된 바,
 - 지출계획현액(2,150억원)의 23.5%, 504억 5,1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순증하여 지출계획한 **이커머스 입점피해 회복자금**(350억원)이 예측보다 수요가 적어 17억원이 지출되고, 333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중소기업 직접융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 관여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접수, 심사, 보증, 대출 등이 시행되고 있어 접수단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지원대상자의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이커머스입점 피해회복자금**(350억원)의 경우처럼 순증하여 지출계획하였음에도 재원의 95.1%가 미집행되는 사례를 양산하기 보다는 정책사업 내 당초 지출계획액의 범위에서 사업내용간 지출액을 조정하여 대응한 이후 추가적인 수요발생이 확실시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0〉 기금별 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사업수)	세 부 사 업	지출계 현 액 (A)	지출 액 (B)	다음연 도 월 액 (C)	불 용 액 (D=A-B-C)	불 용 률 (E = D / A)
계	10	301,766	235,462	2,823	63,481	21.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 자 계 정 (1)	중 소 기 업 직 접 융 자	215,000	164,548	-	50,451	23.5
사회적경제계정 (1)	사 회 적 경 제 기 업 투 용 자	5,000	3,454	-	1,546	30.9
식 품 진 흥 기 금 (1)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	515	-	1,484	74.2
기 후 대 응 기 금 (3)	소계	45,400	40,526	2,823	2,051	4.5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33,386	29,012	2,823	1,551	4.6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사업	11,014	11,014	-	-	0.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	500	-	500	50.0
사 회 복 지 기 금						
장애인복지계정 (1)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7,400	3,445	-	3,954	53.4
자 활 계 정 (1)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615	418	-	197	32.1
주 거 지 원 계 정 (1)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 자	8,350	5,886	-	2,464	29.5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	공 무 원 주 택 전 세 금 지 원	18,000	16,668	-	1,331	7.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422~1499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1 ('25. 4.10)

○ '24회계연도 기금결산결과를 검토하면, 지출계획된 융자성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규모는 지난 '23회계연도와 비교하여 58.6%, 234억 5,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회계연도중 순증된 특정 기금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대규모 발생되어 기금결산결과 융자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을 것이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중 중소기업 직접융자**는 지난 '23회계연도에도 지출계획현액의 14.7%, 294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표 3-2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중 중소기업 직접융자 지출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 = D / A)
'24회계연도	215,000	164,548	-	50,451	23.5
'23회계연도	200,000	170,531	-	29,468	14.7

- 단년도에 한정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액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이후 수요에 따라 필요시 정책사업내 혹은 정책사업간 재원조정을 추진하는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융자성사업을 지출계획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소요예산을 즉시 해당 세부사업에 담아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 담보되어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나,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치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미리 꺼내어 지출계획한 이후 관행적으로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재순환시키기 보다는 재원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적립성재원으로 유지시켜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비용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24회계연도에는 16개 기금, 21개 계정에서 133개 비용자성사업을 지출 계획하였으나, 12개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되었고, 11개 세부사업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확인됨
- **도시재생기금**의 세부사업인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다동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토지보상 절차지연으로 보상비 등이 미집행되어 지출계획현액(885억 7,200만원)의 97.9%, 867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벤처투자시장 위축, 양적완화 축소(Quantitative Tightening)에 따른 유동성 감소 등을 사유로 **창조산업 펀드 출자**,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창업지원펀드 출자**, **스마트시티펀드 출자**에서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 **스케일업 펀드 출자**의 경우, 지난 '23회계연도에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지출계획현액(180억원)의 88.8%, 160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어 국내 벤처·창업 투자환경이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유동성이 높지 않고, 글로벌 경제동향 또한 변동가능성이 낮은 상태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필요에 따라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용처리된 자원(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해당 사업예산에 재투입되지 않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물론 다음연도에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입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금은 불용이나 이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자원운용 환경인 바,

- 당해연도에 지출계획한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기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시에 가용재원을 모두 확보하여 지출계획하기 보다는 기금조성 취지에 맞게 재원조성에 주력하며 필요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출계획을 가·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2〉 비용자성 사업중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 부 사 업	지출계획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 = D / A)
도 시 재 생 기 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8,572	1,177	678	86,716	97.9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재 난 예 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43,969	355,754	39,111	49,103	11.1
〃	응 급 복 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3,994	17,322	2,215	14,456	42.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 자 계 정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77,200	65,928	-	11,271	14.6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이 재 민 재 해 보 상	42,379	38,470	-	3,909	9.2
도로굴착복구기금	도 로 굴 착 복 구 공 사	45,863	41,200	1,114	3,547	7.7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창 조 산 업 펀 드 출 자	10,300	7,803	-	2,496	24.2
〃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10,500	8,291	-	2,208	21.0
〃	창업지원펀드 출자	15,500	13,365	-	2,135	13.8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 조 지 급	7,800	5,798	-	2,001	25.7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의료 및 구호비 지원	9,249	7,862	-	1,386	15.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4,500	3,297	-	1,203	26.7

〈표 3-23〉 비용자성 사업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 부 사 업	지출계획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주1)} (E = D / A)
지역교류협력기금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400	-	-	400	100.0
"	수도계량기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90	-	-	90	100.0
도 시 재 생 기 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8,572	1,177	678	86,716	97.9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채 권 및 기타 관리비	30	2	-	27	91.7
지역교류협력기금	타 지 방 자 치 단 체 재 해 · 재 난 구 호 지 원	1,000	200	-	800	80.0
"	해외도시 현지 협력행사	60	12	-	47	79.5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연 구 용 역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500	87	87	325	65.0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 회 적 금 융 기 관 지 원	370	134	-	235	63.5
지역교류협력기금	서 울 우 수 외 국 인 유 학생 유치 프로그램	600	297	-	302	50.4
"	해 외 도 시 철 도 관 계 자 초 청 교 육 사 업	76	38	-	38	50.3
양성평등가족기금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 한 단 체 지 원	100	50	-	50	50.0

※ 주1) “집행률 50% 이하”는 “불용률이 50% 이상”과 동일하여 불용률로 산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5. 6.26.)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823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조 2,171억 5,800만원으로 2023 회계연도 말 7조 6,622억 8,000만원에 비하여 5,54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조 5,523억 6,2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756억 4,600만원
- 식품진흥기금 567억 1,000만원
- 기후대응기금 452억 4,5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417억 6,200만원
- 양성평등가족기금 243억 3,5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1억 5,300만원
- 사회복지기금 641억 6,6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75억 6,500만원
- 재난관리기금 8,100억 9,600만원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2억 1,300만원
- 지역교류협력기금	19억 8,700만원
- 국제개발협력기금	33억 7,200만원
- 도시재생기금	1,339억 9,800만원
- 관광진흥기금	75억 9,200만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2억 1,800만원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21억 2,400만원
- 고향사랑기금	5억 6,600만원
- 공공시설등설치기금	0원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5,10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라.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

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마.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